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31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2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은 기관의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“산업 진흥” 과 “중소기업 육성” 에 한정되어 존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“경제 진흥 및 활성화” 와 “기업 성장지원” 을 추가하여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“경제 진흥 활성화” 와 “기업성장 지원” 을 추가하여 기관의 설립 목적을 수정함(안 제1조)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, 창업을 촉진하며, 중소기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”을 “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, 기업 성장,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·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·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, 창업을 촉진하며, 중소기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, 기업 성장,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·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를 “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, 기업 성장,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로 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산업진흥원”을 “서울경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3년 단위”를 “1년 단위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3월말”을 “2월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서울산업진흥원”을 “서울경제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서울산업진흥원”을 “서울경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서울산업진흥원”을 “서울경제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사목 중 “서울산업진흥원”을 “서울경제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“서울산업진흥원”을 “서울경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제1항 중 “서울산업진흥원”을 “서울경제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서울산업진흥원”을 “서울경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<u>서울산업진흥원</u>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7조(임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<u>3년 단위로</u> 연임될 수 있으며, 그 밖에 대표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6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<u>3월말까지</u>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<u>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, 기업 성장, 산업 육성 등을 지원</u>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<u>서울경제진흥원</u>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<u>서울경제진흥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임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1년 단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결산서의 제출) ----- ----- ----- -----<u>2월말</u>----- -----.</p>